

【1】 제32회의회(臨時會) 회기결정의건

제의년월일 : 1995. 1. 21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32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회기 : 1995. 1. 21 ~ 1. 27 (7일간)

【2】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체제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수방단으로 재 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
- 『사전계획대피제』 등 신 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편성코자 함.

주요골자

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 인원으로 편성.

(안 제2조 제3항)

나. 1개의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

(안 제4조 제1항)

다.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편리한 날짜를 택하여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 (안 제6조 제1항)

##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관할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 다만 다른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수방단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수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2. 하천제방, 제당,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경계
3.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의 피난시설의 설치, 장애물등의 제거
4.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5. 인명피해경감을 위한 구조활동 지원
6.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자

2.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③ 단장은 단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반에 두는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5 - 10명

가.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나. 주민대피의 안내

다. 재해 유관기관과의 연락 유지

라.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10 - 30명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조치

나. 재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 3. 구호반 : 5 - 10명

가. 재해민의 식량보급

나. 사망자,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마. 기타 이재민의 사후관리

제5조(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6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2. 경찰관 및 군인

3. 타지역으로 전출한자

4. 기타 군수가 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자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의 기간 사이에 편리한 날자를 택하여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단원의 긴급동원

2. 기상 및 재해의 예보 전달

3. 재해위험지구와 관계기관과의 연락

4.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응급복구나 장애물등의 제거

5. 고립자, 부상자, 익사자 및 표류자등의 구조

6.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7. 방재의식의 계몽

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방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별로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수방단 활동) ① 군수는 수방단 활동을 재해 사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집중강우로 인하여 재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피해발생시 편성된 각반의 분장임무와 상관없이 수방단을 동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지역 수방단외에 인근지역의 수방단의 협조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제8조(동원절차) 풍수해 대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동원할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소집통보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방단장을 즉시 담해 단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단, 소집통보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크, 전화등 유선시설을 이용하고 통지서는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응소결과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을 동원한 경우에 군수는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응소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동원 교육 훈련	소 집 통 보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소집기간	19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      일      시간 )
소집장소		
기 타		
참고사항		
19      년      월      일		
양 주 군 재 해 대 책 본 부 장 (인)		

절취선

제 호	수 령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동원, 교육, 훈련,)소집 통보서를 수령함.		
19 년 월 일		
수령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시 행 기 관 명

수신

참조

제목 수방단동원 결과보고

발신

(인)

1) 구 분		동 원 사 항			5) 비 고
		2) 대상 인원	3) 동원 결과	4) 비율(%)	
누계	6) 계	단/명	단/명		
당일	7) 계				
8) 동원기간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일간 )
9) 동원장소					
10) 동원목적					
11) 기타 참고사항					